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 . .<br>(제 회) |      |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  
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br>(○○○○○○장관) |
| 제출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진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립소방병원 개원이 도래(2026년 6월)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필요한 재해보상 관련 급여 등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 1) 국립소방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현재는 경찰병원)로 지정
- 2)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병원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 (현행)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

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안 제8조제1항)

- 경찰병원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경찰병원에서 국립소방병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경찰병원을 지역소방전문치

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함

다.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필요한 재해보상 관련 급여 등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추가 (안 제11조의3)

\* 소방공무원의 고유식별정보와 재해보상 관련 급여(요양, 순직 등) 신청 정보 및 결과, 그 밖에 역학  
조사에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경찰병원**”을 “**국립소방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를 “**국립소방병원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가**”를 “**국가 또는 시·도가**”로 한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병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는 소방공무원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인적사항, 재해보상 급여(요양, 순직 등) 신청

정보 및 결과, 그 밖에 역학조사에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u>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u><br>②·③ (생략)<br>④ 소방공무원의 진료 시작 시기 등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소방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u> 정한다.                             |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br><u>법 제10조제2항----- 국립소방병원-----</u><br>----.<br>②·③ (현행과 같음)<br>④ -----<br>-----<br>----- <u>국립소방병원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u><br>----.                          |
|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u>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u><br><u>&lt;신 설&gt;</u><br><br>1. (생략)<br>2. <u>제1호</u> 외의 의료기관으로서 시·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 |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u>법 제10조제2항-----</u><br>-----<br>-----<br>-----.<br>1. 「 <u>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u> 」 제2조제2항에 따른 <u>경찰병원</u><br>2. (현행 제1호와 같음)<br>3. <u>제1호 및 제2호</u> -----<br>-- |

기관

② 소방청장은 시·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② -----  
-----  
----- 법 제10조제2항  
-----

-----.  
제1항제3호-----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국가 또는 시·도가 -----  
-----  
-----  
-----  
-----.

제11조의3(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는 소방공무원의 고유식별 정보 등의 인적사항, 재해보상 급여(요양, 순직 등) 신청 정보

|  |                                                      |
|--|------------------------------------------------------|
|  | <u>및 결과, 그 밖에 역학조사에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
| 연 락 처       | (044) 205 - 7423 |